

시흥월곶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제 정 : 2003. 03.02
1차 개정 : 2004. 12.16
2차 개정 : 2006. 03.01
3차 개정 : 2007. 03.02
4차 개정 : 2008. 07.01
5차 개정 : 2010. 04.12
6차 개정 : 2011. 04.08
7차 개정 : 2011. 12.01
8차 개정 : 2013. 03.01
9차 개정 : 2016. 04.15
10차 개정 : 2018. 04.17
11차 개정 : 2020. 07.29
12차 개정 : 2021. 06.22
13차 개정 : 2022. 07.06

시 흥 월 곶 초 등 학 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흥월곶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시흥월곶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다음을 교육목표로 한다.

1.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
2.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어린이
3.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품성이 바른 어린이
4. 심미적 감성으로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우리 학교는 시흥월곶초등학교라 한다.

제5조 (위치) 우리 학교는 시흥시 월곶해안로 69번길(월곶동)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1.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2.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봄방학
4. 여름방학
5. 가을방학

6. 겨울방학

7. 학년말방학

8.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사계절방학 등)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3호~ 제8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경기도시흥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

제11조 (교육과정 등)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해당 학년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따라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 의한 학교장허가체험학습 기간은 경기도교육청의 세부지침에 따라 정한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③ 재취학(취학)·편입·전입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 (평가)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평가는 성적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 평가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③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처리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처리한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면제·유예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 아동으로 본교 통학구역 관할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17조 (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방법) 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전·편입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21조(귀국학생의 전·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학년은 외국에서 수학한 전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학력인정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한다.
- ③ 귀국학생,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가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및 인권 존중 차원에서 무호적자·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학구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월세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등)만으로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유예·면제 등의 재취학·편입학) ①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자가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유예 및 면제자 중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학년은 서류 심사를 거쳐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③ 학생 및 보호자가 학년을 다르게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별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호자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2. 취학이 불가능한 불구·폐질 등
3. 기타 학교장이 유예·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④ 유예 및 면제 시기는 입학할 학생은 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2월말로 하고 재학생은 장기간 수업 결손 사유 발생 시의 학기 중에 한다.

제24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석학생에 대한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을 실시하여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에는 결석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을 요청하고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학교장은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제27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해 운영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졸업

제27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 ⑤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수익자부담경비 및 기타비용의 징수

제29조(기타 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제9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0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범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 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제1항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10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흥월곶초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한다.

제35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흥월곶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교육활동 침해 예방

제37조(교육활동 침해 예방)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여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의 세부 지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

제38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 13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39조 (학칙개정 절차)

- ① 공(사)립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① 이 학칙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③ 이 학칙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학칙은 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6개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시흥월곶초등학교장 성명

학교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졸업장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함.

년 월 일

시흥월곶초등학교장 성명

학교장
직인